CHUNGKANG AI GUIDELINE

청강문화산업대학교

AI 활용 가이드라인

AI 활용 가이드 및 윤리·저작권 지침

제정 2026. 3. 23. · 개정 2026. 11. 23.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략지원처 · AI혁신센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제·개정 이력

구분	일자	주요 내용	주관
제정	2026. 3. 23.	AI 활용 공통 기준, 창작 단계별 기준, 출처 표기, 저작권 윤리지침 제정	전략지원처 AI혁신센터
개정	2026. 11. 23.	스쿨 의견 반영(조문 번호 정비, 텍스트 창작 기준·대학본부 지원 체계 신설 등) 및 국내외 AI 윤리·저작권 지침 반영(수업별 AI 활용 유형, 외부 공개 표시, 딥페이크·음성 복제 기준, 저작권 등록 기준 등) 및 대학 특성 반영(팀 프로젝트 기준, 연기 전공 학생의 초상·음성 보호, 딥페이크 피해 지원, 학생 작품 보호, 교내 AI 창작 행사, 별지 서식 3종 등),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2026. 8. 21.) 반영(첫 수업 방침 논의·공개 및 변경 안내, 공평한 접근 지원, 과제·평가 설계 조항 제15조의2, 체크리스트 별표 6~8 신설 등) 및 조문 정합성 정비(개인정보·민감 정보 입력 기준, AI 탐지·채점 보조 기준, 행정 업무 인간 검토 조항 제19조의2 신설, 개정 주관 정비 등)	전략지원처 AI혁신센터

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저작권법」,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관련 법령과 상위 지침이 바뀌면 제63조에 따라 개정한다.

목 차

CONTENTS

01 제1장 총칙 5

02 제2장 AI 활용의 기본 원칙 8

03 제3장 구성원별 활용 기준 11
제1절 학습자(학생) 가이드 12
제2절 교원(교수자) 가이드 12
제3절 직원(행정) 가이드 14

04 제4장 창작 활동 단계별 AI 활용 기준 15

05 제5장 포트폴리오·졸업작품·외부 활동 특별 규정 18

06 제6장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20

07 제7장 저작권 윤리지침 23
제1절 AI와 저작권 기본 법리 24
제2절 스타일 모방과 저작권 25
제3절 전공별 저작권 리스크 26
제4절 AI 도구별 저작권 이슈 26
제5절 저작권 외 지식재산권 26
제6절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 27

08 제8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28

09 제9장 운영 및 관리 30

10 제10장 위반 사항 처리 33

11 제11장 평가 및 지속적 개선 35

ADD 부칙 37

APP 별표 38
별표 1 AI 활용 출처 표기 양식 39

별표 2 창작 활동 단계별 AI 활용 기준표 40
별표 2-2 텍스트 창작 단계별 AI 활용 기준표 41
별표 3 AI 도구별 저작권 이슈 가이드표 42
별표 4 전공별 저작권 리스크 매트릭스 43
별표 5 저작권 침해 리스크 체크리스트 44
별표 6 학습자 지도를 위한 교수자 AI 활용 윤리 체크리스트 45
별표 7 교수자의 AI 활용 윤리 자가 체크리스트 46
별표 8 학습자의 AI 활용 윤리 자가 체크리스트 47

FORM **별지 서식** 48

별지 제1호 실존 인물 초상·음성 등 AI 이용 동의서 49
별지 제1호 부속 초상·음성 등 AI 이용 동의 철회서 52
별지 제2호 팀 프로젝트 AI 활용 합의서 53
별지 제3호 스쿨·전공별 AI 세부 지침 표준 목차 54

REF **참고 법령 및 지침** 55

I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가이드라인의 위상

■ 제1조 (목적)

① 본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연구·창작·행정 환경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에 대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구성원이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활용 문화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창작 역량과 AI 활용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건전한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권장과 안내를 기본 취지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가이드라인은 대학 내 모든 교육·연구·창작·행정 활동에 적용되며, 정규 학기·계절학기·비교과·산학협력·졸업작품 등 대학 구성원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②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활용을 모두 포괄한다.

1. 학습자의 창작 활동 및 과제 수행에서의 AI 활용(학생의 AI 활용 창작물에 관한 기준은 제4장·제5장, 별표 2 및 별표 2-2에 규정한다)
2. 교육·연구 목적의 AI 활용(교수자·연구자의 활용 기준은 제3장 제2절에 규정한다)
3. 행정 업무에서의 AI 활용(직원의 활용 기준은 제3장 제3절에 규정한다)

③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2026)은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연구 활동을 제외하나, 본 가이드라인은 창작·연구·행정 활동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연구 활동에 관하여는 대학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따른다.

■ 제3조 (용어 정의)

① "생성형 AI(Generative AI)"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자동완성을 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문서 작성, 분석, 설계, 창작 등의 결과를 생성한다.

② "AI 생성물"이란 생성형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③ "핵심 창작물"이란 학습자의 창작 역량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에서 당해 학습자의 독창적 표현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창작적 산출물을 말한다. 핵심 창작물의 구체적 범위는 각 전공의 세부 지침이 해당 전공의 평가 목적에 직결되는 산출물로 한정하여 정의한다.

④ "보조 에셋"이란 창작물의 핵심이 아닌 부가적 구성 요소로서, 배경 텍스처, 배경 음악, 참고용 이미지, 색보정·렌더링 등 도구적 활용 결과물을 말한다.

⑤ "창작 워크플로우"란 아이디어 발산부터 최종 완성까지의 창작 과정 전체를 말한다.

⑥ "AI 피드백"이란 AI가 산출한 결과물 자체를 창작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석·평가·지적·개선 제안 등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 "AI 생성"이란 AI가 산출한 결과물을 창작물의 구성 요소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⑧ "딥페이크"란 AI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말하며, 특히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하거나 변형한 것을 포함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 참조).

■ 제4조 (가이드라인의 위상)

① 본 가이드라인은 대학 내 AI에 관한 공통 최소 기준과 필요한 항목을 제시한다.

② 각 스쿨 및 전공은 전공·창작 특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스쿨·전공별 세부 지침의 제정과 특성화를 보장하며, 세부 지침은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2조(핵심 창작물의 AI 직접 생성 원칙 금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공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창작 활동 단계별 AI 활용 기준(제21조, 별표 2 및 별표 2-2)은 제24조에 따라 전공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본 가이드라인은 학칙·학사규정·연구윤리규정 등 기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된다.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학 규정에 따른다.

④ 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를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며, 그 5대 핵심 원칙(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상위 지침이 개정된 경우 제63조에 따라 반영한다.

⑤ 자율전공 학생, 복수전공·부전공 이수 학생 및 타 스쿨 교과목 수강생은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스쿨·전공의 세부 지침을 따른다. 졸업작품은 학생이 소속된 전공(자율전공 학생은 졸업작품을 지도하는 전공)의 세부 지침을 따른다.

⑥ 각 스쿨은 별지 제3호의 표준 목차를 참고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II

제2장

AI 활용의 기본 원칙

제5조 인간의 판단과 책임

제6조 투명성

제7조 학습 윤리와 학술 정직성

제8조 창작 기관으로서의 특별 원칙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및 공정성

■ 제5조 (인간의 판단과 책임)

① AI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전제로 사고와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이다. 구성원은 AI 생성물을 활용함에 있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구성원은 AI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AI 생성물의 채택·수정·공개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AI는 인간의 자율성, 존엄, 시민권 및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

■ 제6조 (투명성)

- 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과제, 보고서, 창작물, 연구 결과물 등을 제출할 때 AI 활용 내용을 제6장 및 별표 1에 따라 기재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7조 (학습 윤리와 학술 정직성)

- AI를 활용함에 있어 학습 윤리와 학술 정직성을 유지해야 한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이나 연구 성과로 그대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창작 기관으로서의 특별 원칙)

-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콘텐츠 창작자 양성을 핵심 사명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특별 원칙을 준수한다.

1. 창작 주체성 보장: AI는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이며, 학습자의 창작 주체성과 독창적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목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2. 창작 과정의 투명성: 창작물 제작 과정에서 AI가 개입한 단계(아이디어 발산, 레퍼런스 수집, 초안 생성, 수정, 완성 등)를 구분하여 투명하게 기록한다.
3. 권리 보호 의식 함양: 학습자는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에서 타인의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도 이해한다.
4. 산업 생태계 책임: AI 활용이 창작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크리에이터의 생존과 창작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윤리적 활용을 지향한다.
5. 창작 방식 선택권 존중: 학습자에게 AI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AI를 사용하지 않는 창작 방식을 선택한 학습자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AI 활용 역량 자체가 학습 목표인 교과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및 공정성)

① AI 서비스에 개인정보, 대학 내부 민감 정보, 연구 데이터 등을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관한 상세 기준은 제8장에서 규정한다.

② 구성원은 AI 생성물에 성별, 인종, 장애, 지역, 사회적 배경 등에 관한 편향이나 차별적 표현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검토한 후 활용한다.

③ 교수자는 유료 AI 도구의 이용 여부에 따라 학습자 간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승인 도구 또는 무료로 접근 가능한 도구를 우선 지정한다. 장애 학생 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보조 기술로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포용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④ AI 생성물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당한 일반화, 편향 또는 차별적 표현이 발견된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정·재구성하거나 사용을 중단한다. AI를 이용하여 혐오·차별·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성·확산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⑤ 교수자는 비용, 기기·통신 환경, 장애, 언어 및 AI 활용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학습자가 수업·과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근 가능한 도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동일한 도구 이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을 유지하면서 대체 도구 또는 동등한 수행 방법을 제공한다.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교과목에서도 AI 활용 역량이라는 학습 목표를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보장한다.

III

제3장

구성원별 활용 기준

제1절 학습자(학생) 가이드

- 제10조 교수자 지침 준수
- 제11조 창작물 제출 원칙
- 제12조 사실 관계 확인
- 제13조 학습 목표 점검

제2절 교원(교수자) 가이드

- 제14조 강의계획서 내 AI 활용 범위 명시
- 제15조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제15조의2 과제 및 평가 설계
- 제16조 연구 윤리 준수
- 제17조 AI 도구 활용 교육 지원

제3절 직원(행정) 가이드

- 제18조 행정 업무 보조 활용
- 제19조 공식 문서 검증 의무
- 제19조의2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인간 검토
- 제20조 민감 정보 입력 금지

제1절 학습자(학생) 가이드

■ 제10조 (교수자 지침 준수)

① 학습자는 수업 활동이나 과제 수행 시 강의계획서 또는 교수자가 별도로 제시한 AI 활용 범위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② 학습자는 첫 수업에서 AI 활용 방침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학기 중에는 최신 강의계획서와 공지 사항을 확인한다. 과제·시험별로 별도 기준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교수자와 논의한 내용이 다른 학습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논의 결과를 수업 전체에 공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창작물 제출 원칙)

① 학습자는 AI를 활용한 경우 그 내용을 별표 1에 기재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그대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교수자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② 교수자가 AI 활용 사실의 공개를 요구한 과제에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AI 생성물이나 AI 활용 결과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제12조 (사실 관계 확인)

① 생성형 AI는 허위 정보(환각 현상)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는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학습자는 AI가 제시한 사실, 수치, 인용문 및 참고문헌을 신뢰할 수 있는 1차 문헌, 공식 자료 또는 원본 데이터와 대조하고, 자료의 발행 시점과 최신성을 확인한다. AI가 제시한 답변이나 링크만으로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출처의 실재 여부와 해당 출처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확정된 사실로 제시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학습 목표 점검)

① 학습자는 AI 활용이 본인의 학습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AI에 의존하여 학습 역량의 성장을 방해하는 활용을 지양해야 한다.

② 학습자는 AI 도구 사용 이후 자신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점검하며, AI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보조 도구로 활용한다.

제2절 교원(교수자) 가이드

■ 제14조 (강의계획서 내 AI 활용 범위 명시)

① 교원은 수업의 목표와 특성에 맞추어 AI의 활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강의계획서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필요 시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강의계획서에 일괄 사전 승인하는 AI 도구 및 활용 범위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3호·제5호 단서 참조).

③ 교원은 교과목의 AI 활용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유형 중 하나로 정하고, 그 근거를 학습 목표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과제별로 유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사용 금지: 수업 활동·과제·시험 등에서 AI 사용을 금지한다. 기초 역량 형성 과목 등 AI가 핵심 학습 목표를 대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제한적 사용: 교원이 사용 가능한 도구, 활용 범위, 주의 사항을 제시하고, 학습자는 승인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창작 교과목은 제21조의 단계별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3. 사용 허용: AI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AI 생성물을 검토·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활용 사실은 별표 1에 따라 기재한다.

④ 강의계획서에는 AI 활용 유형, 활용 목적, 허용 도구 목록, 평가 기준, 부정행위의 정의와 처리 기준, 출처 표기 방식, AI 탐지 도구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학습자는 AI 활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전에 교원에게 확인한다.

⑤ 교원은 첫 수업에서 AI 활용 방침을 구두로 설명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확인하며, 합의된 내용을 모든 수강생에게 동일하게 공개한다. 팀티칭 담당 교원과 조교 등 수업 운영 참여자는 해당 방침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한다. 논의·합의는 본 가이드라인 및 스쿨·전공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⑥ 수업의 AI 활용 방침은 학기 동안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 사유, 적용 시점 및 과제·시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고 최신 강의계획서 또는 공지에 기록한다. 이미 수행한 활동에 변경된 제한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습자가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 (평가의 공정성 확보)

① 교원은 AI 활용 평가 기준과 표절·부정행위 범위를 사전에 설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AI 활용 여부·내용을 제33조에 따라 확인한다.

② AI 탐지 도구의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아니한다. 부정행위의 판단은 기획 노트, 버전 이력, 중간 산출물 등 제작 과정 기록을 중심으로 하며,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한다.

③ AI 탐지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 적용 범위 및 기술적 한계를 학기 초에 학생에게 미리 알린다. 필요한 경우 구술 설명, 작업 과정 시연, 중간 산출물 점검 등으로 학생의 창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AI 탐지 도구는 대학이 승인한 도구를 사용하며, 학생 제출물을 승인되지 않은 외부 탐지 서비스에 입력하지 아니한다(제52조).

④ 문체·어휘의 변화, 표현의 불일치, 허위 참고문헌 등은 확인이 필요한 징후로만 활용하며, 이러한 징후나 AI 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제출물의 내용, 단계별 산출물, 학습자의 설명과 이해 수준 및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허용된 AI 활용의 출처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된 대리 수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수정·가공만으로 학습자의 실제 수행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5조의2 (과제 및 평가 설계)

① 교원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실제 수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계한다. 단순 정의 나열·요약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공별 실제 사례, 수업 활동, 개인의 경험과 성찰, 문제 설정과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과제는 필요에 따라 기획, 중간 산출물, 수정, 최종 결과물의 단계로 나누어 점검하고, 각 단계의 주요 판단과 수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평가는 AI 활용 여부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이해, 독자적 판단, 창작적 기여 및 결과물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설계하고, 평가 요소와 배점은 사전에 안내한다.

③ 시험·평가 방식은 교과목의 특성과 AI 활용 유형에 맞추어 정한다. 필요한 경우 대면 실습·오프라인 평가를 활용하고, 온라인 평가에서는 구술 설명, 발표, 수시 퀴즈, 중간 산출물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병행하여 학습자의 실제 수행과 이해 수

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출제 과정에서 AI의 응답 양상을 고려하여 문항의 적절성과 변별력을 점검할 수 있다. 이때 제52조에 따라 실제 비공개 시험 문항을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아니하며, 공개 예시나 가상 문항 등으로 검토한다.

⑤ 교원이 채점·피드백 등 평가 업무에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성적과 평가에 관한 최종 판단은 교원이 직접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라 제54조의 승인 도구를 사용하고, AI 활용 여부와 범위를 학습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 제16조 (연구 윤리 준수)

- 교원은 연구 수행 시 학술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AI를 활용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활용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제17조 (AI 도구 활용 교육 지원)

① 교원은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AI 활용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AI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한다.

② 교원이 AI를 활용하여 강의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내용의 정확성, 다양성 및 대표성을 검토하여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원이 강의자료·수업용 콘텐츠에 AI 생성물을 활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항목을 참고하여 사용 도구, 목적 및 반영 범위를 학습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인용·출처를 표기한다. AI가 제시한 참고문헌과 근거 자료의 실재 여부, 내용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인한 후 활용한다.

④ 교원은 AI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AI 생성물의 오류·편향·활용 적절성을 함께 분석·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운영한다. AI 활용 이후에는 학습자가 결과물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요 판단과 제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학습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제3절 직원(행정) 가이드

■ 제18조 (행정 업무 보조 활용)

- 직원은 행정 업무의 효율화(초안 작성, 요약, 번역 등)를 위한 보조 도구로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9조 (공식 문서 검증 의무)

- 공식 문서를 확정하기 전에는 AI 생성 결과물의 정확성을 원본 데이터(법령, 통계, 규정 등)와 대조하여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 제19조의2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인간 검토)

- 직원은 입학, 장학, 성적·학적, 채용, 징계 등 구성원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서 AI의 분석·추천 결과만으로 결정을 확정하지 아니하며, 담당자가 그 근거를 직접 검토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업무에 AI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대학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친다.

■ 제20조 (민감 정보 입력 금지)

- 직원은 개인정보 및 대학 내부 민감 정보(인사, 재무, 학생 정보, 보안 관련 정보 등)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승인된 보안 도구의 활용에 관한 대학본부의 지원 체계는 제54조에 따른다.

IV

제4장

창작 활동 단계별 AI 활용 기준

제21조 창작 워크플로우 단계별 기준

제22조 핵심 창작물의 AI 직접 생성 원칙 금지

제23조 텍스트 창작물의 AI 생성과 피드백 구분

제24조 전공별 세부 조정의 한계

■ 제21조 (창작 워크플로우 단계별 기준)

① 창작 활동은 다음 7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AI를 활용한 경우 그 내용은 제29조 및 별표 1에 따라 기재하고, 별표 1의 '사용 목적·제작 단계'는 아래 7단계(제2항에 따라 치환한 단계를 포함한다) 중 해당 단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상세 출처 명시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아이디어 발산·브레인스토밍 단계: AI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출처 명시를 권장한다.
2. 레퍼런스·트렌드 조사 단계: AI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출처 명시를 권장한다.
3. 콘셉트 아트·시안 탐색 단계: 제한적 허용(교수자 허용 범위 내)하며, 출처 명시가 필수이다. 다만, 강의계획서에 사전에 일괄 승인된 AI 도구 및 활용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교수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4. 핵심 창작물 직접 생성 단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5. 보조 에셋 생성 단계: 제한적 허용(교수자 사전 승인 필수)하며, 출처 명시가 필수이다. 다만, 강의계획서에 사전에 일괄 승인된 AI 도구 및 활용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교수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6. 후반 작업·수정 보조 단계: 허용하며, 출처 명시를 권장한다.
7. 문서·발표 자료 작성 단계: 허용하며, 핵심 내용 생성 시 출처 명시가 필수이다.

② 본 단계 구분은 시각 창작을 기준으로 한다. 텍스트 창작은 별표 2-2를, 프로그래밍·게임 개발 등 타 직군의 워크플로우는 별표 2의 직군별 워크플로우 치환표에 따라 치환하여 적용한다.

■ 제22조 (핵심 창작물의 AI 직접 생성 원칙 금지)

① 학습자의 창작 역량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졸업작품 등에서 핵심 창작물을 생성형 AI가 직접 생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핵심 창작물의 범위는 각 전공별 세부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다만, 해당 교과목의 학습 목표가 생성형 AI 활용 역량 자체를 포함하는 경우(예: AI 기반 콘텐츠 제작, 에이전트·MCP 개발, 생성형 AI 게임 개발 등 AI 활용 역량을 직접 평가하는 교과목)에는 강의계획서에 그 범위와 평가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핵심 창작물의 AI 직접 생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는 AI 활용 과정과 결과물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청강국제 AI 장르영상제 등 AI를 활용한 창작 자체를 목적으로 대학이 주최·주관하는 행사·공모전은 별도 운영 요강으로 AI 활용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본문의 원칙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 요강은 AI 활용 사실의 표시,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제7장), 실존 인물 보호(제44조)를 포함해야 하며, 출품작을 정규 교과목의 과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기준을 따른다.

■ 제23조 (텍스트 창작물의 AI 생성과 피드백 구분)

① 웹소설·장르소설·시나리오 등 텍스트 창작물에 대하여는 AI 생성과 AI 피드백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플롯, 원고 본문, 시나리오(장면·대사) 등 텍스트 창작물의 핵심 내용을 AI가 직접 생성하는 것(AI 생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기획 노트 검토, 문장 분석, 논리·개연성 지적, 개선 방향 제안 등 AI 피드백은 허용하며, 활용 사실은 제29조 및 별표 1에 따라 기재한다.

④ 텍스트 창작의 단계별 AI 활용 기준은 별표 2-2에 따른다.

⑤ 텍스트 창작물의 부정행위 판단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과정 기록 중심으로 한다.

■ 제24조 (전공별 세부 조정의 한계)

① 각 스쿨 및 전공은 창작 워크플로우 단계별 AI 활용 기준을 전공 특성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② 제22조(핵심 창작물의 AI 직접 생성 원칙 금지)는 전공별 세부 지침에서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습 목표상 예외가 인정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그 예외의 범위 내에서 세부 지침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기준의 배제·면제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허용 범위의 조정,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전공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의 조정을 의미한다.

제5장

V 포트폴리오·졸업작품·외부 활동 특별 규정

제25조 취업 포트폴리오 AI 활용

제26조 졸업작품 및 팀 프로젝트의 AI 활용

제27조 외부 공모전·산학협력 프로젝트

제28조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 귀속

■ 제25조 (취업 포트폴리오 AI 활용)

- 취업용 포트폴리오 제작에 AI를 활용한 경우, 제작 단계와 활용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면접 시 창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6조 (졸업작품 및 팀 프로젝트의 AI 활용)

① 졸업작품은 학습자의 종합적 창작 역량을 평가하는 작품이므로, 원칙적으로 AI가 핵심 창작물을 직접 생성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도 교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경우 그 내용은 별표 1에 기재하고 교수자가 제33조에 따라 확인한다.

② 팀 프로젝트·공동 창작(졸업작품 포함)을 수행하는 팀은 작업 시작 시 AI 활용 도구, 활용 범위, 기록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 등으로 기록하여 지도 교수자에게 제출한다.

③ 팀은 AI를 활용한 작업에 대하여 활용한 팀원, 활용 단계, 반영 부분을 구분하여 별표 1에 기재한다. 팀원 각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창작 과정과 AI 활용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팀원 1인이 합의 범위를 벗어나 AI를 활용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팀원에게 있으며, 교수자는 팀원별 기여와 과정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른 팀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팀원은 다른 팀원이 창작한 원화·원고·음성·연기 영상 등을 그 팀원의 동의 없이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AI 학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외부 공모전·산학협력 프로젝트)

① 외부 공모전 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시, 해당 주최자의 AI 활용 규정을 우선 준수하며, 본 가이드라인과 충돌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웹툰 플랫폼 공모전 등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AI 미사용 확인·보증을 요구하는 공모·등록 절차가 있으므로, 학습자는 응모 시점의 최신 요강을 확인하고, 허위로 확인·보증한 경우 수상 취소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한다.

③ 학습자가 외부로부터 일러스트·웹툰·게임 에셋·영상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외주·아르바이트 등), 의뢰인에게 AI 활용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알리고 계약서나 의뢰 조건의 AI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AI 미사용을 조건으로 한 의뢰에 AI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 귀속)

① AI 활용 작품의 권리 귀속은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졸업작품·외부 활동의 저작권·윤리 문제는 제7장 및 별표 5에 따라 확인한다.

② AI를 활용한 작품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따라 AI가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③ 학습자는 기획 노트, 스케치, 버전 이력, 레이어가 보존된 작업 파일, 프로젝트 파일, 주요 프롬프트 및 생성 기록 등 창작 과정 기록을 작품 공개 후 일정 기간 보존할 것을 권장한다. 이 기록은 평가 시 과정 확인(제15조)뿐만 아니라, 저작권 분쟁 시 독자적 창작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④ AI를 활용한 작품을 유튜브 등 플랫폼 수익 창출, 영화제·배급사를 통한 배급, 굿즈·출판물 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학습자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스쿨은 사용한 AI 도구의 이용약관상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플랫폼·영화제의 AI 관련 규정, 제3자 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VI

제6장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제29조 출처 공개 의무

제30조 기재 항목

제31조 활용 수준별 명시 기준

제32조 금지 사항

제33조 출처 표기 양식

■ 제29조 (출처 공개 의무)

① 과제, 보고서, 창작물 제출 시 AI를 활용한 경우 제작 과정의 활용 내용을 별표 1에 기재하고, 상세 출처는 제31조에 따라 명시한다. 다만, 동일한 활용 내용이 반복되는 교과목 등에서는 과제 단위로 일괄 기재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경미한 활용에 대하여는 출처 명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자는 기재 방식의 간소화 범위를 학기 초에 안내한다.

② AI를 활용한 창작물을 SNS, 포트폴리오, 공모전, 전시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AI 활용 사실을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실존 인물이나 실제 사건으로 오인될 수 있는 딥페이크성 결과물은 AI로 생성되었음을 감상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작품 설명, 크레딧 등 감상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AI 도구로 작품을 만드는 학생·교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은 EU AI법 제50조 등의 취지를 참고한 대학 자체의 권장 기준이다.

■ 제30조 (기재 항목)

① 출처 표기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재한다.

1. 사용 도구 및 버전(예: 사용한 AI 서비스명과 모델·버전)
2. 사용 목적(아이디어 도출, 구조 설계, 요약, 디버깅, 이미지 생성 등)
3. 주요 지시 내용 요약: 대화형 AI는 핵심 프롬프트 요약을 기재한다. 에이전트형 AI 등으로 하나의 작업에 다수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핵심 프롬프트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션 요약 또는 작업 로그 요약으로 대체 기재할 수 있다.
4. 활용 범위: 제작 단계, 반영 부분·정도를 기재한다(예: 초안 30% 반영, 배경 이미지 생성). 다만, 반영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치 대신 구체적 설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5. 검증 방법(원자료 대조, 추가 문헌 확인 등)
6. 한계 인식(오류 및 편향 가능성, 환각 가능성 검토 내용)
7. 생성물의 재구성 및 판단 근거: AI 생성물의 채택·배제 여부, 주요 수정·편집 내용 및 학습자 자신의 판단을 기재한다.
8. 학습 과정 성찰(선택): AI 활용이 이해·창작·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 또는 한계를 주었는지와 이후 보완할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항목은 제31조의 활용 수준과 교수자의 사전 안내에 따라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다. 전체 대화 기록이나 모든 출력 화면의 일괄 제출을 기본 의무로 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핵심 과정만 설명한다.

③ 교수자가 별도로 정한 인용 방식이 없는 보고서·논문형 과제는 APA, MLA 등 학술 인용 양식의 생성형 AI 인용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별표 1 예시 참조).

■ 제31조 (활용 수준별 명시 기준)

① 활용 수준별 상세 출처 명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순 맞춤법 교정, 문장 다듬기,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 보조·번역 보조: 명시 권장(간소 기재 또는 생략 가능). 다만, 번역 보조의 범위를 넘어 AI가 내용을 생성한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다.
2. 아이디어 및 구조 설계 보조: 명시 권장
3. 핵심 내용 생성, 이미지나 코드를 직접 생성한 경우: 명시 필수

② 출처 명시는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단이 아니므로, 교수자는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재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다.

■ 제32조 (금지 사항)

- 출처 표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AI를 공동 저자로 기재하는 행위
2. AI가 생성한 허위 출처를 검증 없이 인용하는 행위
3. 개인정보 및 내부 민감 자료를 입력하여 생성된 결과를 제출하는 행위
4. AI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순수 창작물로 허위 표기하는 행위
5. AI 서비스가 결과물에 부여한 워터마크·메타데이터 등 AI 생성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조하여 AI 미사용 작품으로 제출·공개하는 행위

■ 제33조 (출처 표기 양식)

- 양식은 별표 1에 따른다. 교수자는 기재 내용과 결과물을 수업·스쿨 지침에 비추어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 학생에게 제작 과정과 활용 내용을 확인한다.

VII

제7장

저작권 윤리지침

제1절 AI와 저작권 기본 법리

제34조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제35조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판단 기준
제36조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제37조 AI 공동 저자 기재 금지

제2절 스타일 모방과 저작권

제38조 스타일 모방의 기본 원칙
제39조 스타일 모방 금지 행위
제40조 영감과 모방의 구분
제41조 창작 생태계 존중 및 학생 창작물 보호

제3절 전공별 저작권 리스크

제42조 전공 공통 저작권 리스크

제4절 AI 도구별 저작권 이슈

제43조 AI 도구별 저작권 이슈 가이드

제5절 저작권 외 지식재산권

제44조 초상권·음성권 및 딥페이크
제45조 상표권·캐릭터 상품화권
제46조 공연·음악 권리

제6절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

제47조 예방
제48조 발견
제49조 조치
제50조 지원

제1절 AI와 저작권 기본 법리

■ 제34조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① 원칙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

② 다만, 인간이 AI 출력물에 대하여 창작 의도, 실질적 기여, 창작적 표현 결과를 더한 경우, 해당 인간의 기여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인간 저자가 표현 요소를 충분히 결정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고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간의 창작물이 결과물에 인식 가능하게 남아 있거나 AI 생성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수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호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생성형 AI 산출물'은 등록할 수 없고,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은 그 기여 부분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제35조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판단 기준)

① AI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창작 의도: 인간이 AI에게 무엇을 생성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의도했는가
2. 실질적 기여: 인간이 AI 출력물을 얼마나 수정·편집·재구성하였는가
3. 창작적 표현 결과: 최종 결과물에 인간의 독창적 표현이 반영되었는가

②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 예로는 AI 산출물에 대한 창작적 수정·보완, 다수 산출물의 창작적 선택·배열, 자신이 창작한 원작(스케치·원고 등)을 바탕으로 한 AI 활용이 있다. 프롬프트 입력만 하거나, 색상 일부 변경 등 사소한 수정만 한 경우에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제36조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①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타인의 저작물 포함)를 학습하여 작동하며, 학습 데이터의 수집·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②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는 AI 학습 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한다. 다만, 위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참고 기준이며, 공정이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

③ 본 대학 구성원은 AI 도구를 사용할 때 해당 도구의 학습 데이터 출처와 적법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제37조 (AI 공동 저자 기재 금지)

- 생성형 AI는 법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기재할 수 없다. 다만, AI 활용 사실 자체는 "도구 활용" 형태로 별도 표기할 수 있다(예: "본 작품은 ○○(생성형 AI 도구명)를 아이디어 발산 보조로 활용함").

제2절 스타일 모방과 저작권

■ 제38조 (스타일 모방의 기본 원칙)

① "스타일" 또는 "화풍"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AI로 모방하여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구체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③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AI를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과 기존 저작물에 근거하여 만들었는지(의거성)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침해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 참고).

■ 제39조 (스타일 모방 금지 행위)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프롬프트에 직접 입력하여 그 스타일을 복제하려는 행위(예: "○○ 작가 스타일로 그려줘", "지브리 스타일 캐릭터")
2. 특정 작품의 캐릭터, 배경, 컬러링 등 구체적 표현을 AI로 모방하는 행위
3. 모방 결과물을 상업적 목적(포트폴리오, 공모전, 외부 의뢰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
4. 타인의 저작물을 이미지 변환(image-to-image) 등의 방식으로 AI에 입력하여 원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고 이를 공개·제출하는 행위. 다만, 수업 내 분석·학습 목적으로 교수자가 허용한 범위의 이용은 예외로 한다.
5. 특정 작가의 작품을 모아 AI 모델을 추가 학습(LoRA 등 미세조정)시켜 그 작가의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 이 행위의 위법성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창작 생태계 존중(제41조)을 위하여 대학의 윤리 기준으로 금지한다.

■ 제40조 (영감과 모방의 구분)

▪ 특정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독창적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영감을 얻은 과정과 최종 창작물의 독자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1조 (창작 생태계 존중 및 학생 창작물 보호)

① 다른 크리에이터의 스타일을 AI로 손쉽게 복제하는 행위는 창작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구성원은 동료 크리에이터의 창작물과 스타일을 존중하며, AI를 통한 무분별한 스타일 복제를 지양한다.

② 대학은 학생의 과제·졸업작품 등 창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이를 AI에 입력하여 홍보물 등을 생성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는다. 교수자가 학생 작품을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여 평가·피드백하는 경우에도 제52조를 준수한다.

③ 대학은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 플랫폼의 AI 학습 거부 설정, 이용약관상 학습 허용 조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3절 전공별 저작권 리스크

■ 제42조 (전공 공통 저작권 리스크)

- 모든 전공의 구성원은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특정 작가·스튜디오·브랜드 등의 화풍·스타일 복제, 기존 IP의 캐릭터·세계관·디자인·설정·스토리 등의 표절, 음악·음성·초상의 무단 사용, 상용 에셋·오픈소스 등의 라이선스 충돌, AI 생성 결과물의 학습 데이터 적법성 문제 등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특정 전공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2차 창작 시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습자는 진출하려는 플랫폼 및 콘텐츠 업계의 AI 정책을 확인해야 하며, 상세 기준은 각 전공 세부 지침에 따른다.

제4절 AI 도구별 저작권 이슈

■ 제43조 (AI 도구별 저작권 이슈 가이드)

- 생성형 AI 도구 유형별 주요 저작권 이슈 및 활용 가이드는 별표 3에 따른다. 구성원은 도구 활용 전 반드시 해당 도구의 이용약관 및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절 저작권 외 지식재산권

■ 제44조 (초상권·음성권 및 딥페이크)

① 실존 인물의 얼굴·특징을 AI로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 목적 외에는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연예인·공인의 얼굴을 캐릭터 디자인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동료 학생, 교직원 등 실존 인물의 얼굴·음성·성명을 AI로 합성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고, 그 용도와 공개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제작·반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며,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본 가이드라인의 교육적 처리 원칙(제60조)과 별개로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치한다.

④ 자신의 얼굴·음성 등이 AI로 무단 합성·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구성원은 창작자심리인권센터에 신고·상담할 수 있다. 대학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심리 상담,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수사기관 신고 안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외부 지원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신고나 상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 (상표권·캐릭터 상품화권)

- 기존 게임·애니메이션·만화의 로고, 캐릭터, 세계관 등을 AI 생성물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46조 (공연·음악 권리)

① 공연예술스쿨 학생의 경우, 기존 공연 작품의 안무·대본·음악을 AI로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실존 배우·성우·가수의 음성을 AI로 복제(보이스 클로닝)하는 경우 제44조 제2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신탁·등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리단체의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6년 8월 AI 활용 음악저작물 등록 기준을 시행 직후 철회하였다), 음원 발표 전 최신 정책을 확인하고 창작 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③ 뮤지컬연기·연극영상연기 등 연기 전공 학생의 얼굴, 음성, 연기 영상은 학생 본인의 인격적 권리이자 직업적 자산이다. 수업·공연·작품 촬영물을 AI 학습, 디지털 복제(디지털 휴먼·AI 배우 등), 음성 합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수자·대학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는 용도·기간·공개 범위를 특정하여 받는다. 학생은 동의를 거부하거나 장래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평가·배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절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

■ 제47조 (예방)

- 각 스쿨은 학기 초 저작권 기초 교육을 실시하며, AI 활용 시 저작권 리스크 체크리스트(별표 5)를 제공한다.

■ 제48조 (발견)

① 교수자는 과제·졸업작품 심사 시 별표 5의 저작권 침해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침해 가능성을 1차적으로 확인한다.

② 교수자는 저작권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적 판단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침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교수자는 대학의 저작권 검토 창구(제54조 제3항)에 통지하여 전문적 확인을 거친다.

③ 저작권 침해 여부의 최종 판단은 대학의 검토 체계(관련 부서 협의 및 필요 시 외부 전문가·법률 자문 포함)에서 한다.

■ 제49조 (조치)

①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작품은 제출 무효 처리하며, 심각한 경우 학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조치 전에 학습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② 외부 권리자에게 피해가 확대된 경우, 대학은 해당 학생에게 법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 제50조 (지원)

- 학생이 AI 활용 중 저작권 문제로 외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학은 법률 자문 연결 등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가 본 가이드라인의 금지 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학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VIII

제8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제51조 개인정보 입력 금지

제52조 대학 내부 민감 정보 입력 금지

제53조 AI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및 안전성

■ 제51조 (개인정보 입력 금지)

- AI 서비스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번, 사진 등)를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4조 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용도와 범위에서 필요한 얼굴·음성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4조에 따른 승인 도구를 우선 사용하고 서비스의 데이터 학습·보관 정책을 확인한다(제53조).

■ 제52조 (대학 내부 민감 정보 입력 금지)

① 대학 내부 민감 정보(인사 정보, 재무 정보, 학생 정보, 보안 관련 정보, 연구 데이터, 내부 문서 등)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 문항, 비공개 강의자료, 교수자의 피드백, 다른 학생의 제출물, 미발표 연구·창작물도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수자의 피드백과 학생 제출물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54조에 따른 승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다. 비공개 시험 문항은 승인 도구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 (AI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및 안전성)

① 구성원은 AI 서비스 이용 전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데이터 활용 정책을 확인해야 하며, 입력한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② 대학이 공식 제공하지 않는 외부 AI 서비스는 정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며, 대학 승인 도구를 우선 사용한다. AI가 생성한 코드는 오류나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테스트 후 사용한다.

③ 구성원은 입력 자료와 대화 기록에 대한 서비스 운영자의 접근 가능성, 보관 기간, 삭제 절차, 제3자 공유 및 모델 학습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터 학습 제외·공유 제한 등 보호 설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과 한계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보호 설정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51조·제52조의 입력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IX

제9장

운영 및 관리

제54조 대학본부의 지원 체계

제55조 사전 안내

제56조 구성원 AI 역량 교육 체계

제57조 AI 활용 공개 기준 운영

■ 제54조 (대학본부의 지원 체계)

① 대학본부는 보안이 확보된 AI 도구(입력 데이터 비학습 계약이 체결된 도구 등)를 선별·도입하고, 사용 가능 도구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승인된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52조의 민감 정보 입력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② 대학본부는 외부 정책(법령, 플랫폼 정책, 공모전 규정 등)의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구성원에게 공지한다.

③ 대학본부는 저작권 검토·법률 자문 창구를 상설 운영하며, 딥페이크 등 AI 관련 인권 피해의 신고·상담은 창작자심리인권센터가 담당한다(제44조 제4항).

④ 위반 판정 절차와 소명 절차는 대학본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⑤ 대학본부는 공통 교육 콘텐츠와 스쿨별 세부 지침 템플릿을 제작·지원한다.

⑥ 대학이 구성원에게 AI 챗봇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AI 기반 서비스임의 사전 고지, 생성물 표시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한다.

⑦ 대학본부는 제9조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AI 도구의 공평한 접근, 이용 환경 및 기초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스쿨·교수자는 학습자의 접근성 문제를 확인하여 지원 창구와 연계하고, 대학은 필요한 대체 도구·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제55조 (사전 안내)

① 대학은 매 학년도 시작 전 AI 활용 원칙과 출처 명시 기준을 구성원에게 안내하며, 강의계획서나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활용 범위와 책임 기준을 공유한다.

②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등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구성원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의 영문 요약본 등 외국어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 제56조 (구성원 AI 역량 교육 체계)

▪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1학년(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 교육): AI 기본 개념, 대학 가이드라인 안내, 창작 윤리·저작권 기초,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신고 방법
2. 2학년(전공별 워크숍): 전공 특화 AI 도구 활용법, 팀 프로젝트 AI 활용 합의 방법, 저작권 실무, 외주·공모전 시 주의사항
3. 3학년(졸업작품 및 취업 준비): 졸업작품 착수 전 AI 활용 기준·저작권 점검(별표 5), 포트폴리오 표기, 작품 배급·상업적 이용 시 확인 사항

※ 전공심화과정 등 3학년을 넘는 과정은 제3호에 준하여 운영한다.

4. 교원 대상 연수: AI 활용 수업 설계, 평가 방법론, 창작 분야 저작권 최신 동향
5. 전년도 위반 사례 공유: 익명화된 사례를 통한 예방 교육(연례 점검 결과 연계)

■ 제57조 (AI 활용 공개 기준 운영)

① 대학은 AI 활용 공개 기준 및 민감 정보 입력 제한 기준을 운영하며, 구성원 대상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② 교원과 학습자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의 체크리스트를 수업 준비·운영·평가 및 과제 제출 과정의 자가 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안내와 예방을 위한 참고 도구이며, 일괄 제출이나 추가 증빙을 기본 의무로 하지 아니한다. 과제별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작성 범위를 사전에 안내한다.

X

제10장

위반 사항 처리

제58조 학생 위반 시 조치

제59조 교직원 위반 시 조치

제60조 처리 원칙

■ 제58조 (학생 위반 시 조치)

① 학생이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 경고
2. 재제출
3. 감점
4. 학사규정에 따른 조치

② 위반 정도는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하며, 구체적 기준은 학사규정과 스쿨별 세부 지침에 따른다.

가. 경미: 단순 출처 표기 누락, 허용 범위를 경미하게 넘은 보조적 활용 — 경고 또는 재제출

나. 보통: AI 생성 내용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시하는 행위, 사실 검증의 중대한 누락 — 감점

다. 중대: 시험 중 AI 무단 사용, 과제 전체의 AI 대리 생성, 고의적 도용, 딥페이크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학사규정에 따른 조치

■ 제59조 (교직원 위반 시 조치)

▪ 교직원이 민감 정보 무단 입력이나 검증 없는 공식 문서 확정 등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고의성과 보안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제60조 (처리 원칙)

① 위반 사항 처리에 있어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인식 개선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 시 교육 이수를 병행한다.

② 위반 처리는 규제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전한 AI 활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것이므로, 교육적 안내와 개선 기회의 제공을 우선한다.

XI

제11장

평가 및 지속적 개선

제61조 연례 점검

제62조 환류 체계

제63조 가이드라인 개정 절차

■ 제61조 (연례 점검)

① 대학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1. 수업 내 AI 활용 사례
2. 출처 명시 준수 여부
3. 위반 사례 유형
4. 구성원 인식 변화
5. 보안 이슈 발생 여부
6. AI 활용의 학습 목표 달성 효과와 과제·평가 방법의 적절성
7. 비용·기기·장애·언어 등으로 인한 AI 자원 접근 격차와 지원 실태
8. 수업 방침의 일관성, 변경 안내 및 학습자 소명 절차의 운영 실태

② 점검은 기존 자료와 설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스쿨의 별도 자료 준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 제62조 (환류 체계)

① 점검 결과와 스쿨별 기존 AI 가이드·운영기준을 조사·수집하고, 세부 가이드 및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활용 범위 조정, 명시 기준 보완, 보안 기준 강화 등을 개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② 환류 과정에서는 교원과 학습자의 의견, 수업 운영 사례 및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를 함께 수렴하여 교육적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의견과 사례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정보 및 비공개 창작물의 보호 기준을 준수한다.

■ 제63조 (가이드라인 개정 절차)

① 가이드라인 개정은 AI혁신센터가 주관하며, 각 스쿨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AI혁신센터는 기획·연구, 초안 작성, 스쿨 협의 및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전략지원처는 심의·시행에 관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② 기술 변화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고정된 규범이 아닌 매년 개선되는 발전적 모델로 운영한다.

③ 다만, 보안 및 저작권 관련 긴급한 기술적·법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AI혁신센터의 판단에 따라 대학본부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ADDENDA

부칙

제정 2026. 3. 23.

■ 제1조 (시행일)

-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 조치)

- 본 가이드라인 시행 전 이미 진행 중인 과제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르되, 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 부과되는 과제부터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개정 2026. 11. 23.

■ 제1조 (시행일)

- 본 가이드라인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5항·제6항과 제15조의2는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제2조 (경과 조치)

- 본 가이드라인 시행 당시 이미 부과되어 진행 중인 과제·작품 및 평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세부 지침의 정비)

- 각 스쿨 및 전공은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부 지침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의 표준 목차(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포함한다)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참고한다.

APPENDIX

별표

별표 1	AI 활용 출처 표기 양식
별표 2	창작 활동 단계별 AI 활용 기준표
별표 2-2	텍스트 창작 단계별 AI 활용 기준표
별표 3	AI 도구별 저작권 이슈 가이드표
별표 4	전공별 저작권 리스크 매트릭스
별표 5	저작권 침해 리스크 체크리스트
별표 6	학습자 지도를 위한 교수자 AI 활용 윤리 체크리스트
별표 7	교수자의 AI 활용 윤리 자가 체크리스트
별표 8	학습자의 AI 활용 윤리 자가 체크리스트

[별표 1] AI 활용 출처 표기 양식

과제, 보고서, 창작물, 연구 결과물 제출 시 AI를 활용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기본 항목(도구·버전, 사용 목적·제작 단계, 수업 정책 준수 여부)을 작성하고, 상세 출처 항목은 제31조의 '명시 권장·필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AI 활용 출처 표기

사용 도구/버전	(예: 사용한 AI 서비스명과 모델·버전)
사용 목적·제작 단계	(예: 아이디어 발산, 콘셉트·시안 탐색, 이미지 생성 등 — 제21조의 7단계, 별표 2-2의 단계 또는 직군별 치환 단계 기준)
주요 지시 내용 요약	(대화형 AI는 핵심 프롬프트 요약 / 에이전트형 AI는 세션·작업 로그 요약으로 대체 가능)
활용 범위	(예: 초안 30% 반영, 배경 이미지 생성 등 —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 설명으로 기재 가능)
검증 방법	(예: 원자료 대조, 추가 문헌 확인 등)
한계 인식	(오류·편향·환각 가능성 검토 내용)
수업 정책 준수 여부	(해당 수업의 AI 활용 지침 준수 확인)
외부 공개 시 AI 활용 표시 방법	(예: 작품 설명·크레딧에 '배경 일부 생성형 AI 활용' 기재 — 제29조)
생성물의 재구성 및 판단 근거	(채택·배제한 내용, 주요 수정·편집 사항 및 자신의 판단)
학습 과정 성찰(선택)	(학습·창작에 도움이 된 점, 확인한 한계 및 보완할 점)

※ 본 양식은 대학 공통 기본 양식이다. 각 스쿨은 전공·창작 특성에 맞게 세부 항목을 구체화한다. 교수자는 기재 내용과 결과물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학생에게 확인한다.

※ 생성물의 재구성 및 판단 근거, 학습 과정 성찰 항목은 제30조·제31조와 교수자의 사전 안내에 따라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다.

학술 인용 예시(APA 방식)

OpenAI. (2026). ChatGPT [Large language model]. https://chatgpt.com — 본문 인용: (OpenAI, 2026). 도구 버전과 연도는 실제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다. MLA 방식은 MLA Style Center의 생성형 AI 인용 안내를 참조한다.

[별표 2] 창작 활동 단계별 AI 활용 기준표

창작 활동은 다음 7단계로 구분한다. AI를 활용한 경우 그 내용은 별표 1에 기재하며, 상세 출처 명시는 아래 기준을 따른다.

창작 단계	AI 활용 권장도	출처 명시	비고
① 아이디어 발산·브레인스토밍	적극 권장	명시 권장	창작 방향 탐색, 키워드 확장
② 레퍼런스·트렌드 조사	적극 권장	명시 권장	시장 분석, 스타일 트렌드 파악
③ 콘셉트 아트·시안 탐색	제한적 허용	명시 필수	교수자 허용 범위 내. 강의계획서에 일괄 승인된 도구·범위가 명시된 경우 사전 승인으로 간주
④ 핵심 창작물 직접 생성	원칙 금지	—	범위는 각 전공 세부 지침에 따름
⑤ 보조 에셋 생성	제한적 허용	명시 필수	배경 텍스처, 배경 음악, 참고용 이미지 등(교수자 사전 승인 필수, 일괄 승인 시 예외 적용)
⑥ 후반 작업·수정 보조	허용	명시 권장	색보정, 렌더링 보조, 퇴고 보조 등 도구적 활용
⑦ 문서·발표 자료 작성	허용	명시 필수 (핵심 내용 생성 시)	기획서, 제안서, 발표 슬라이드 등

직군별 워크플로우 치환표

본 단계 구분은 시각 창작을 기준으로 하며, 각 직군은 아래와 같이 치환하여 적용한다.

직군	① 아이디어	② 조사	③ 설계·시안	④ 핵심 산출물	⑤ 보조 산출물	⑥ 후반·수정	⑦ 문서·발표
시각 창작 (애니·만화·일러스트)	아이디어 발산	레퍼런스 조사	콘셉트 아트	전공 세부 지침에서 정함	배경·소품 에셋	색보정·렌더링	제출 자료
게임·프로그래밍	아이디어·기획	기술 조사	설계·프로토타입	전공 세부 지침에서 정함	에셋·리소스	디버깅·테스트·리팩토링	문서·발표
디자인·패션	아이디어	트렌드 조사	시안·룩북	전공 세부 지침에서 정함	패턴·텍스타일 보조	마감·보정	발표 자료

※ 각 스쿨·전공은 제24조에 따라 위 치환표를 전공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단, ④ 핵심 창작물 직접 생성의 원칙 금지는 전공별 지침에서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습 목표상 예외가 인정되는 교과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2] 텍스트 창작 단계별 AI 활용 기준표

웹소설·장르소설·시나리오 등 텍스트 창작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AI 생성과 AI 피드백의 구분은 제23조에 따른다.

창작 단계	AI 생성	AI 피드백	출처 명시
① 아이디어 발산·기획	적극 권장	적극 권장	명시 권장
② 레퍼런스·자료 조사	적극 권장	적극 권장	명시 권장
③ 플롯·구성 설계	제한적 허용(참고용 시안, 교수자 허용 범위 내)	허용	명시 필수
④ 본문·시나리오(장면·대사) 직접 생성	원칙 금지	허용(분석·지적·개선 제안)	—
⑤ 퇴고·수정 보조	허용(문장 다듬기 등. 핵심 표현·대사 생성은 금지)	허용	명시 권장
⑥ 문서·발표 자료 작성	허용	허용	명시 필수 (핵심 내용 생성 시)

※ 텍스트 창작물의 부정행위 판단은 AI 탐지 도구 결과만으로 하지 아니하며, 기획 노트, 버전 이력, 중간 산출물 등 제작 과정 기록을 중심으로 한다(제15조).

[별표 3] AI 도구별 저작권 이슈 가이드표

생성형 AI 도구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저작권 이슈를 가진다. 구성원은 도구 활용 전 반드시 해당 도구의 이용약관과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구 유형	대표 예시	주요 저작권 이슈	활용 가이드
텍스트 생성	ChatGPT, Claude, Gemini	허위 출처 생성(환각), 기존 문장 표절	생성된 텍스트의 사실 검증 필수. 허위 출처 인용 절대 금지
이미지 생성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학습 데이터 저작권, 스타일 모방, 캐릭터 표절	특정 작가명 프롬프트 입력 금지. 상업적 활용 시 이용약관 확인 필수
음악 생성	Suno, Udio	기존 곡 표절, 음원 학습 데이터 적법성	생성 음악의 상업적 활용 전 반드시 표절 검토. 음원 저작권·저작인접권 확인
영상 생성	Sora, Runway, Kling	기존 영상 모방, 초상권 침해, 특정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	실존 인물 모방 금지.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 영상 생성 금지
코드 생성	GitHub Copilot, ChatGPT	오픈소스 라이선스 충돌, 기존 코드 표절	생성 코드의 라이선스 호환성 확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 시 주의

※ 위 도구 목록은 예시이며, 새로운 AI 도구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구성원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할 때에도 본 표의 이슈 유형을 참고하여 저작권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

[별표 4] 전공별 저작권 리스크 매트릭스

각 전공 영역의 주요 저작권 리스크와 기본 가이드 방향을 참고용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표의 리스크는 해당 전공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상세 기준은 각 전공 세부 지침에 따른다.

전공 영역	주요 AI 활용	핵심 저작권 리스크	기본 가이드 방향
게임	캐릭터 콘셉트 아트, 배경 에셋, 게임 음악, 스토리 기획	기존 게임 IP 캐릭터·세계관 모방, 에셋 스토어 라이선스 충돌, 게임 음악 표절	상용 에셋과 AI 생성 에셋의 구분 명확화. 게임 IP 모방 절대 금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배경 일러스트, 스토리보드, 색채 설계	특정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지브리·픽사 등), 캐릭터 디자인 표절, 프레임 보간	애니메이션 스타일 참고와 모방의 경계 설정. 캐릭터 디자인은 인간 직접 창작 원칙
만화·웹툰·웹소설	캐릭터 디자인, 배경 작화, 컬러링, 스토리 구조, 웹소설 기획·퇴고	특정 웹툰 작가 화풍 복제, 캐릭터 표절, 스토리 표절, 연재 플랫폼 AI 정책	웹툰·웹소설 플랫폼 AI 정책 준수. 작가 화풍 모방 금지. 본문·원고는 인간 직접 창작 원칙
패션 (스타일리스트)	디자인 시안·룩북, 패턴·텍스타일, 스타일링 레퍼런스	브랜드·디자이너 스타일 복제, 실존 모델 초상권, 상용 패턴 저작권 침해	브랜드·디자이너명 프롬프트 금지. 오리지널 디자인 인간 직접 창작 원칙
공연예술	대본·시나리오, 안무 아이디어, 무대·조명 시안, 음향	기존 대본·안무·음악 표절, 실존 공연 무단 각색, 초상권·성명권, 학생 배우의 얼굴·음성·연기 영상 무단 학습·복제	기존 공연 IP 각색 시 원저작자 허락 필수. 안무·연출 인간 직접 창작 원칙. 학생 배우의 초상·음성 이용 시 서면 동의 (별지 제1호)
융합콘텐츠	기획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인터랙션 설계,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복수 매체 결합 시 저작권 중첩, 프로토타입의 원저작물 유사성, 오픈소스 라이선스	매체별 저작권 이슈 개별 검토. 융합 결과물의 창작적 기여 명확히 기술
푸드	메뉴 기획, 플레이팅·푸드스타일링 시안, 레시피 개발 보조, 상품 촬영 시안	레시피·상표 저작권, 브랜드·셰프 스타일 모방, 푸드 이미지 초상·저작권	레시피는 참고용 한정. 특정 셰프·브랜드 스타일 프롬프트 금지
교양교육 (교양교육원)	글쓰기·발표 자료, 리서치 요약, 학습 보조, 교양 창작 과제	학술 표절·환각 정보, 허위 출처 인용, 인용 저작권 미준수	학술 정직성 최우선. 사실 검증 및 출처 명시 필수. 창의성·비판적 사고 배양 저해 지양

※ 본 매트릭스는 각 전공 영역의 기본 가이드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각 스쿨의 세부 리스크는 기존 운영기준 조사·수집과 전공별 검토를 거쳐 세부 지침에 반영한다.

[별표 5] 저작권 침해 리스크 체크리스트

AI 활용 창작물 제출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한다. (어느 한 문항이라도 '예'에 해당하면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1. 특정 크리에이터(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스튜디오 등)의 이름이 프롬프트에 들어갔는가?
2. 기존 작품의 캐릭터·디자인·세계관과 유사한 요소가 있는가?
3. 실존 인물의 얼굴·특징이 AI 생성물에 사용되었는가?
4. 기존 게임·애니메이션·만화의 로고, 캐릭터, 상표가 무단 사용되었는가?
5. AI 생성 음악이 기존 곡과 표절이 의심될 만큼 유사한가?
6. AI 생성 코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충돌 가능성이 있는가?
7.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였는가?
8. AI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순수 창작물로 허위 표기하였는가?
9. 해당 AI 도구의 이용약관상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였는가?
10. 웹툰/게임/애니메이션 플랫폼의 AI 정책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였는가?
11. 타인의 저작물(이미지·원고·음원 등)을 AI에 입력하여 그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었는가?
12. 실존 인물(동료 학생 포함)의 얼굴·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복제하였는가?
13. 실존 인물·사건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결과물을 AI 생성 표시 없이 공개하려 하는가?
14. (팀 프로젝트) 팀원 간 AI 활용 합의 없이 AI를 사용하였거나, 다른 팀원의 창작물을 동의 없이 AI에 입력하였는가?
15. 수익 창출·배급·판매 등 상업적 이용을 앞두고 AI 도구 약관과 플랫폼·영화제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교수자에게 사전 문의한다.

[별표 6] 학습자 지도를 위한 교수자 AI 활용 윤리 체크리스트

제57조 관련. 해당하는 항목은 확인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보완 후 활용하며, 본 체크리스트는 안내와 자가 점검을 위한 참고 도구이다.

교과목 _____ **점검일** _____

단계	점검 항목	확인	해당 없음
준비	학습 목표와 전공 특성에 맞게 AI 활용 유형·허용 도구·범위를 정하고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였는가?	☐	☐
준비	핵심 창작물의 범위와 제22조의 예외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였는가?	☐	☐
준비	비용·기기·장애·언어 등을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도구와 필요한 대체 수행 방법을 마련하였는가?	☐	☐
운영	첫 수업에서 방침과 그 근거를 설명하고 학습자와 논의한 내용을 전체 수강생에게 공개하였는가?	☐	☐
운영	팀티칭 교원·조교와 기준을 공유하고 변경 내용·적용 시점을 사전에 안내하였는가?	☐	☐
운영	AI 사용 사실·출처·재구성 과정과 주요 판단을 기록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는가?	☐	☐
운영	사실·참고문헌의 검증과 편향·차별적 표현의 수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는가?	☐	☐
운영	개인정보와 비공개 수업·시험·학생 작품의 입력 제한 및 도구 보안 설정을 안내하였는가?	☐	☐
운영	AI의 장점·한계·과도한 의존 위험을 설명하고 활용 후 이해 수준을 점검하였는가?	☐	☐
평가	과정·구술·실습 등으로 실제 이해와 수행을 확인하도록 과제·평가를 설계하고 기준을 사전 안내하였는가?	☐	☐
평가	탐지 도구의 목적·범위·한계를 고지하고, 탐지 결과나 문체 변화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않았는가?	☐	☐
평가	부정행위 판단 전에 과정 기록을 검토하고 학습자에게 충분한 설명·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가?	☐	☐

근거: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2026)의 체크리스트 취지를 전공·창작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별표 7] 교수자의 AI 활용 윤리 자가 체크리스트

제57조 관련. 해당하는 항목은 확인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보완 후 활용하며, 본 체크리스트는 안내와 자가 점검을 위한 참고 도구이다.

교과목 _____ **점검일** _____

단계	점검 항목	확인	해당 없음
준비	대학 가이드라인과 스쿨·전공별 세부 지침을 확인하고 수업·평가 목적에 맞게 AI를 활용하였는가?	☐	☐
자료	강의자료의 AI 활용 도구·목적·반영 범위를 안내하고 필요한 인용·출처를 표기하였는가?	☐	☐
자료	AI 생성물의 사실·수치·참고문헌을 원자료와 대조하고 최신성을 확인하였는가?	☐	☐
자료	강의자료의 다양성·대표성을 검토하고 편향·차별적 표현을 수정·재구성하였는가?	☐	☐
권리	타인의 저작권·초상·음성 등 권리를 확인하고 학생 창작물을 동의 없이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았는가?	☐	☐
보안	개인정보·비공개 시험 문항·학생 기록·비공개 연구와 창작물을 입력하지 않았는가?	☐	☐
보안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이용약관·데이터 보관·학습·공유 정책 및 보호 설정을 확인하였는가?	☐	☐
운영	학습자의 접근성과 창작 방식 선택권을 고려하여 수업과 과제를 운영하였는가?	☐	☐
운영	AI의 응답을 최종 판단으로 대체하지 않고 교육 내용과 의사결정을 직접 검토하였는가?	☐	☐
평가	AI 응답 양상을 고려하여 문항의 적절성과 변별력을 점검하되 비공개 시험 문항을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았는가?	☐	☐
평가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제 수행과 이해를 확인하였는가?	☐	☐
평가	AI 탐지의 한계를 고려하고 과정 기록·면담·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는가?	☐	☐
평가	채점·피드백에 AI를 활용한 경우 승인 도구를 사용하고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최종 평가는 직접 판단하였는가?	☐	☐

근거: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2026)의 체크리스트 취지를 전공·창작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별표 8] 학습자의 AI 활용 윤리 자가 체크리스트

제57조 관련. 해당하는 항목은 확인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보완 후 활용하며, 본 체크리스트는 안내와 자가 점검을 위한 참고 도구이다.

교과목 _____ **과제·작품명** _____

※ AI를 활용한 경우 활용 내용은 별표 1에 기재한다.

단계	점검 항목	확인	해당 없음
준비	최신 강의계획서와 과제·시험별 AI 활용 기준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항을 교수자에게 질문하였는가?	☐	☐
준비	승인·허용된 도구와 범위에서 활용하고, 핵심 창작물의 원칙 금지와 해당 과목의 예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과정	AI를 학습·창작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주요 판단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직접 맡았는가?	☐	☐
과정	AI 활용 사실과 범위를 밝히고 도구·제작 단계·출처를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기재하였는가?	☐	☐
과정	AI 생성물의 재구성 내용과 자신의 기여를 설명할 수 있고 필요한 과정 기록을 보관하였는가?	☐	☐
검증	사실·수치·인용·참고문헌의 실재 여부와 정확성·최신성을 원자료로 확인하였는가?	☐	☐
검증	AI 생성물의 편향·차별·혐오·허위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또는 사용 중단을 하였는가?	☐	☐
권리	저작권·초상·음성 등 권리와 이용약관·외부 공모전·플랫폼의 AI 규정을 확인하였는가?	☐	☐
보안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및 비공개 과제·시험·피드백·다른 학생 작품을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았는가?	☐	☐
협업	팀 프로젝트인 경우 AI 활용 합의를 준수하고 팀원별 활용 범위와 창작물 입력 동의를 확인하였는가?	☐	☐
성찰	결과물을 이해하고 제작 과정과 판단 근거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제출	금지된 대리 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출처 표기만으로 금지된 활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가?	☐	☐

근거: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2026)의 체크리스트 취지를 전공·창작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FORMS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실존 인물 초상·음성 등 AI 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부속 초상·음성 등 AI 이용 동의 철회서

별지 제2호 팀 프로젝트 AI 활용 합의서

별지 제3호 스쿨·전공별 AI 세부 지침 표준 목차

별지 제1호 실존 인물 초상·음성 등 AI 이용 동의서(부속: 동의 철회서), 별지 제2호 팀 프로젝트 AI 활용 합의서, 별지 제3호 스쿨·전공별 AI 세부 지침 표준 목차를 둔다. 각 서식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실존 인물 초상·음성 등 AI 이용 동의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44조 제2항 및 제46조 관련

※ 동료 학생, 교직원, 학생 배우 등 실존 인물의 얼굴·음성·성명·연기 영상을 생성형 AI로 합성·변형·복제하거나 AI 학습에 이용하려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에는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합니다.

1. 동의자(권리자)			
성명		**소속·학번(직위)**	
연락처		**미성년자 여부**	☐ 아니오 ☐ 예(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2. 이용자(요청자)			
성명(팀명)		**소속·학번**	
연락처		**지도 교수자**	
3. 작품 정보			
작품·과제명			
교과목(행사)		**제작 기간**	. . .~ . . .
작품 개요	(동의자가 등장하는 장면·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이용 내용	
이용 대상	☐ 얼굴·외모 ☐ 신체·움직임 ☐ 음성 ☐ 성명 ☐ 연기·공연 영상 ☐ 기존 촬영물·녹음물(파일명:) ☐ 기타( )
이용 방식	☐ 이미지·영상 합성·변형 ☐ 음성 합성·복제(보이스 클로닝) ☐ AI 모델 학습·미세조정(LoRA 등) ☐ 디지털 휴먼·AI 배우 제작 ☐ 기타( )
사용 AI 도구	도구명: 외부 서버 업로드: ☐ 없음(로컬 처리) ☐ 있음 / 입력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 제외 설정함 ☐ 해당 없음 ☐ 확인 불가

이용 목적	☐ 수업 과제 ☐ 졸업작품 ☐ 교내 상영·전시 ☐ 공모전·영화제 출품 ☐ 포트폴리오 ☐ 기타( )
공개 범위	☐ 비공개(교수자 제출용) ☐ 교내 한정 ☐ 온라인 공개(플랫폼:) ☐ 외부 상영·배급
이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작품 제출일부터 1년)
종료 후 처리	원본 촬영물·녹음물, 학습 데이터, 학습된 모델 파일: ☐ 지체 없이 삭제 ☐ 보관(사유·기간:) 완성 작품: ☐ 보관·공개 유지 ☐ 공개 중단

5. 별도 동의 항목

아래 항목은 위 동의와 별개로 선택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위 범위의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항목	선택
① 상업적 이용(수익 창출, 판매, 유료 배급, 광고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이용 기간 종료 후 학습된 모델·음성 모델의 보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자의 이름을 작품 크레딧에 표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가명 표기( )
④ 대학 홍보물(웹사이트, SNS, 입시 자료 등)에 작품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이용자 준수 사항

1) 이용자는 이 동의서에 적은 대상·방식·목적·공개 범위·기간 안에서만 이용하며, 범위를 바꾸려면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2) 동의자를 성적·폭력적·혐오적 맥락, 정치적 주장, 특정 상품의 광고 등 동의자의 명예나 인격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3) 원본 촬영물·녹음물과 생성물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자 본인으로 오인되도록 유포하지 않습니다.

4) 작품을 공개할 때에는 가이드라인 제29조에 따라 AI로 합성·생성되었음을 표시합니다.

5) 동의가 철회되거나 이용 기간이 끝나면 위 4.의 '종료 후 처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의자에게 알립니다.

7. 동의자의 권리 안내

1) 동의자는 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거나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성적 평가, 배역 선정, 팀 구성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2) 동의자는 언제든지 [동의 철회서]를 이용자와 지도 교수자에게 제출하여 장래에 대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이용자는 지체 없이 추가 이용과 공개를 중단하고, 원본 자료와 학습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3) 다만, 철회 전에 이미 제출·상영·출품된 부분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와 지도 교수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중단·삭제 요청을 합니다.

4)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나 무단 합성·유포 피해가 있으면 지도 교수자 또는 창작자심리인권센터에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라인 제44조 제4항).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 동의서의 작성·보관과 동의 내용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사실 확인, 동의 범위 관리, 철회·삭제 요청 처리, 분쟁 대응	성명, 소속·학번(직위), 연락처, 서명, 동의 내용 / 이용 대상인 얼굴·음성 등 자료	이용 기간 종료 후 1년(분쟁이 있는 경우 해결 시까지). 이용 대상 자료는 위 4.의 '종료 후 처리'에 따름

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는 경우 이 동의서에 따른 AI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범위에 한하여 본인의 초상·음성 등을 AI로 이용하는 것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인 경우)**	관계:	(서명)
이용자	(서명)	**지도 교수자 확인**		(서명)

※ 작성한 동의서는 동의자·이용자·지도 교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팀 프로젝트는 팀 대표가 이용자로 서명하고 팀원 명단을 별지 제2호 합의서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속]

초상·음성 등 AI 이용 동의 철회서

동의자	성명: 소속·학번(직위): 연락처:
이용자	성명(팀명): 지도 교수자:
작품·과제명	
동의일	년 월 일
철회 범위	☐ 전부 철회 ☐ 일부 철회(철회하는 항목:)
요청 사항	☐ 추가 이용 중단 ☐ 온라인 게시물 삭제 ☐ 상영·배급 중단 요청 ☐ 원본 자료·학습 데이터·모델 삭제 ☐ 삭제 결과 통지 ☐ 기타( )
철회 사유 (선택)	

본인은 위 작품에 대한 초상·음성 등 AI 이용 동의를 위와 같이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이용자 조치 결과]

조치 내용	☐ 이용 중단 ☐ 게시물 삭제 ☐ 원본·학습 데이터 삭제 ☐ 상영·배급처 중단 요청 ☐ 조치 불가 항목 및 사유:
조치 완료일	년 월 일
확인	이용자: (서명) 지도 교수자: (서명)

※ 이용자는 철회서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동의자에게 알립니다. 동의자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작자심리인권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팀 프로젝트 AI 활용 합의서

※ 제26조 제2항에 따라 팀 프로젝트·공동 창작 착수 시 작성하여 지도 교수자에게 제출한다.

항목	기재 내용
교과목·프로젝트명	
지도 교수자	
팀원(역할)	1. ( ) 2. ( ) 3. ( ) 4. ( )
교과목 AI 활용 유형(제14조)	☐ 사용 금지 ☐ 제한적 사용 ☐ 사용 허용
사용하기로 한 AI 도구	
허용 단계(별표 2 기준)	☐ ① 아이디어 ☐ ② 조사 ☐ ③ 시안 ☐ ⑤ 보조 에셋 ☐ ⑥ 후반·수정 ☐ ⑦ 문서·발표 (④ 핵심 창작물은 원칙 금지)
사용하지 않기로 한 부분	
기록 방법	☐ 공유 작업 로그 ☐ 프롬프트·생성 기록 보관 ☐ 버전 관리 도구 ☐ 기타( )
팀원 창작물의 AI 입력	☐ 입력하지 않음 ☐ 해당 팀원 동의 후 입력(대상:)
상업적 이용 계획	☐ 없음 ☐ 있음(배급·판매 등:) → 제28조 제4항 확인

팀원 일동은 위 합의 내용을 지키며, 합의를 변경하는 경우 지도 교수자에게 알리고 다시 작성합니다.

년 월 일

팀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스쿨·전공별 AI 세부 지침 표준 목차

※ 제4조 제6항 및 부칙(개정) 제3조에 따라 각 스쿨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참고한다. 전공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통합할 수 있다.

1. 목적 및 적용 대상(스쿨·전공, 교과목, 비교과·행사)
2. 전공의 '핵심 창작물' 정의(제3조 제3항, 제22조)
3. 창작 단계별 허용 기준(별표 2·별표 2-2의 전공별 조정, 제24조)
4. 교과목 유형별 운영 예시(사용 금지·제한적 사용·사용 허용, 제14조)
5. 권장·승인 AI 도구 목록과 이용약관 확인 사항
6. 팀 프로젝트·졸업작품 운영 기준(제26조, 별지 제2호)
7. 출처 표기 방식의 전공별 간소화 기준(제29조·제31조)
8. 전공별 저작권·초상권 리스크와 금지 행위(제7장, 별표 4)
9. 공모전·플랫폼·업계의 AI 정책 확인 목록(제27조)
10. 작품 배급·수익화 시 확인 절차(제28조 제4항)
11. 위반 처리와 소명 절차(제10장)
12. 문의 창구(지도 교수자, 저작권 검토 창구, 창작자심리인권센터)
13. 수업 방침의 학습자 논의·공개 및 변경 안내 절차(제10조·제14조)
14. AI 자원의 공평한 접근과 대체 도구·학습 지원(제9조·제54조)
15. 과정 중심 과제·평가와 학습 이해 확인(제15조·제15조의2·제17조)
16. 교수자·학습자 체크리스트 활용 및 의견 수렴(제57조·제62조, 별표 6~8)

REFERENCES

참고 법령 및 지침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2026)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026)
- UNESCO,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2023)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OECD AI Principles, 2019·2024 개정)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50(투명성 의무)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2025)
-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2024)
- Writers Guild of America, 2023 MBA(AI 관련 조항)

청강문화산업대학교
AI 활용 가이드라인

발행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획 및 주관 전략지원처 · AI혁신센터

제·개정 제정 2026. 3. 23. · 개정 2026. 11. 23.